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승 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예산안 규모

가. 총괄 (예산안 p9)

(단위 : 천원)

회계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계	742,986,258	701,902,085	41,084,173	5.85
일반회계	676,074,300	637,511,777	38,562,523	6.05
특별회계	66,911,958	64,390,308	2,521,650	3.92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10억 8,417만 3천원이 증액(5.85%)된 **7,429억 8,6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일반회계는 6,760억 7,4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5억 6,252만 3천원이 증액(6.05%) 되었으며,
- ▶ **특별회계는 669억 1,19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165만원이 증액(3.92%) 되었음.

나. 세입예산(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2,986,258	701,902,085	41,084,173	5.85
일반회계	소 계	676,074,300	637,511,777	38,562,523	6.05
	지방세수입	39,193,431	39,193,431	0	0.00
	세외수입	12,696,562	12,566,562	130,000	1.03
	지방교부세	302,010,000	289,796,000	12,214,000	4.21
	조정교부금등	28,730,734	29,369,454	△638,720	△2.17
	보조금	207,332,627	200,475,384	6,857,243	3.42
	보존수입등내부거래	86,110,946	66,110,946	20,000,000	30.25
공기업특별회계		49,184,708	46,663,708	2,521,000	5.40
기타특별회계		17,727,250	17,726,600	650	0.0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0억 8,417만 3천원이 증액(5.85%)된 7,429억 8,6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60억 7,4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5억 6,252만 3천원이 증액(6.05%) 되었고,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91억 8,47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2,100만이 증액(5.40%)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7억 2,7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만원 이 증액(0.00%) 되었음.

나. 세출예산(일반+기타특별+공기업특별)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42,986,258	701,902,085	41,084,173	5.85	
일 반 회 계	소 계	676,074,300	637,511,777	38,562,523	6.05
	의회운영위원회	1,055,544	1,055,544	0	0.00
	총 무 위 원 회	334,409,686	336,451,266	△2,041,580	0.61
	산업건설위원회	340,609,070	300,004,967	40,604,103	13.5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9,184,708	46,663,708	2,521,000	5.40	
기 타 특 별 회 계	17,727,250	17,726,600	650	0.0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0억 8,417만 3천원이 증액(5.85%)된 7,429억 8,62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소관별로 살펴보면

- ▶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5,55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 ▶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344억 9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4,158만원이 감액(△0.61%)되었으며,
- ▶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406억 90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6억 410만 3천원이 증액(13.53%)되었음.
-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1억 8,47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2,100만원이 증액(5.40%) 되었으며,
-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7억 2,72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만원이 증액(0.00%) 되었음.

3. 예비심사 결과

가. 의회운영위원회

- 세입·세출예산안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입·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나. 총무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4건에 74,855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감 액	조정액	사 유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4건	74,855	▲74,855	0		
행정과	행정의 효율성 강화	민관이 함께하는 군정구현	민간단체 활동 지원	301-01(민간경상 사업보조) 행정동우회 행정발전 및 공익봉사활동 지원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	32,555	▲32,555	0	불요불급	p132
				·거창의 인물 현장사업	31,300	▲31,300	0	불요불급	p132
				·등산로 정비	7,000	▲7,000	0	불요불급	p132
				·항강 환경정화사업	4,000	▲4,000	0	불요불급	p132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승인액	조건부승인내역	페이지
	정 책	단 위	세 부					
				2건	6,948,100	6,948,100		
문화 관광과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307-03(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하성단노을생활 문화센터운영 (국가직접사업)	20,100	20,100	사업추진시 자부담 비율만큼 정확하게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고, 사업정산 또한 정확하게 하도록 주문	p153
행복 나눔과	노인 복지 증진	복지시설 운영	노인요양 시설확충 (신축)사업	401-01(시설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6,928,000	6,928,000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만큼 설계를 정확히 하여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를 주문	p182

- 특별회계 : 해당없음

다. 산업건설위원회

○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 2건에 1,000,000천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 해당없음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부기명)	요구액	감 액	조정액	사 유	비고
	정 책	단 위	세 부						
				2건	1,120,000	▲1,000,000	120,000		
건설과	도로건설 및 관리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401-01(시설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오산마을 등 6개소)	720,000	▲600,000	120,000	예산과다	p328
행복 농촌과	행복농촌	농산물 마케팅 고도화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401-01(시설비)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395,000	▲395,000	0	군에서 부지매입후 시행	p389
				401-02(감리비) 신원면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5,000	▲5,000	0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 해당 없음

4. 주문사항 : 해당없음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1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2022년도 기금 변경안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22년도말 조성액 e=d+ a
		수 입 b	지 출 c	증감 d=b-c	
계	135,862,477	872,060	40,000,000	△39,127,940	96,734,537
재정안정화계정	123,499,359	757,222	40,000,000	△39,242,778	84,256,581
통합계정	12,363,118	114,838	0	114,838	12,477,95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2년도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㉓	총 조성규모 ㉔=㉑+ ㉒-㉓
계	96,734,537	-	-	96,734,537
재정안정화계정	84,256,581	-	-	84,256,581
통합계정	12,477,956	-	-	12,477,956

3.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1년말 조 성 액 ㉑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㉔=㉑+㉒-㉓	증감 ㉕=㉔-㉑
		수 입 ㉒	지 출 ㉓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5,862,477	872,060	40,000,000	96,734,537	△39,127,940

4.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2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 변경안 내용으로는 재정안정화계정 20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예비 심사결과

- 총무위원회 :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